

## 국토교통부 지침

「접도구역 관리지침(국토해양부지침, 2013.1.7)」 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 고시합니다.

2013년 월 일

국토교통부장관

### 「접도구역 관리지침」 일부개정(안)

접도구역 관리지침 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한다.

3. 접도구역의 지정, 4. 접도구역의 관리 및 6. 보고 중 “국토해양부장관”을 “국토교통부장관”으로, “국토해양부장관(지방국토관리청장에게 위임)”을 “국토교통부장관(지방국토관리청장에게 위임)”으로 각각 한다.
5. 접도구역안에서의 금지·허용행위 중 “국토해양부령”을 “국토교통부령”으로 한다.

### 부칙

이 지침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.